



# 2026 『하끝 세법(1쇄)』 2차 추록(시행령 개정 반영 26.2.27)

2026 『하끝 세법』(1쇄)의 추록을 올립니다. 세법 시행령이 당초 안과 비교하여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일부 오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부 의미가 바뀌지 않는 단순한 자구수정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페이지	수정전	수정후
p19	(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 운송용역	(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 또는 <b>다른 운송주선업자</b> 로부터 화물을~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또는 <b>다른 운송주선업자</b> 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b>개정</b>
p37	수정전 3.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b>확정신고</b> 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b>1만원</b> 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조특법 104조의8 ②).	수정후 3.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b>확정신고</b> 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b>5천원</b> 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b>개정 (중전 : 1만원)</b>
	수정후 3. 전자신고세액공제 ( <b>조특법 104조의8 ②</b> )	
p58	(4) 전자신고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식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 시 1만원을 세액공제한다.	간이과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식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시 <b>5천원</b> 을 세액공제함 <b>개정 (중전 : 1만원)</b>
p146	무료진료의 가액 무료진료권과 새마을진료권에 의한 무료진료의 가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따라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b>개정 (새마을진료권 삭제)</b>
p164	 투자회사가 보유한~ (내용삽입)  투자유가증권 등	 보험회사가 보유한 변액보험계약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 원가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평가방법이 다른 보험회사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평가방법을 한 번만 변경할 수 있다. <b>개정</b>
p194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교부비율 계산 특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80%~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b>합병교부주식*</b> 가액이 80%~ *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b>개정</b>
p197	② 지분연속성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을 보유할 것 <b>개정안 (중전 : 내국법인)</b>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b>내국법인의</b>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을 보유할 것
p204	3.과세방식 다음의 [방법 1]과 [방법 2] 중 선택 <b>개정</b> (배당금 추가~ [방법 1] 투자포함방식 : 기업소득 × (65%~85%) - [투자액+~ [방법 2] 투자제외방식 : 기업소득 × (20%~40%) - [배당금~	다음의 [방법 1]과 [방법 2] 중 선택 <b>개정</b> (배당금 추가, 중전 : 70%, 15%) [방법 1] 투자포함방식 : 기업소득 × 80% - [투자액+~ [방법 2] 투자제외방식 : 기업소득 × 30% - [배당금+~
p316	(8)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1) ~ (7)과 유사한 소득] ... <b>예</b> 주식대차~환매조건부 매매거래 시 보상액	(8)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1) ~ (7)과 유사한 소득] ... <b>예</b> 주식대차~환매조건부 매매거래 시 보상액, <b>종합투자계좌(IMA)로부터의 이익(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 신설</b>
p317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재평가세율 3% 적용분 재평가적립금(적격합병·분할 시 승계한 금액 포함)과 의제배당 재원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함) :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 제외)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한도로 함) <b>개정안</b>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금액(재평가세율 3% 적용분 재평가적립금(적격합병·분할 시 승계한 금액 포함)과 의제배당 재원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금액은 제외함) :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b>않음</b>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 제외)는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함) <b>개정</b>
p325	① 상품·제품 등의 판매 인도한 날	인도한 날(단,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 <b>개정</b>

페이지	수정전	수정후
p335	대상자 월정액급여 <sup>주)</sup>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월정액급여 <sup>주)</sup>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b>개정</b> (중전 : 210만원, 3천만원)
p342	(5)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 ☞ 부동산(토지·건물)과 함께 ~ 내용삽입	☞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한 지원금) 또는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 사업소득 <b>개정</b>
p357	* 자녀등 :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 (이하 같음)	* 자녀 등 부양가족 : 거주자의 직계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사람, 동거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한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b>개정</b>
p358	⑦ 어린이집~ 내용추가 ⑧ 국세~	⑦-1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과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b>개정</b>
p363	*3) 학원 또는 ~ ① 초등학교 취학 ~ ② 과세기간 종료일 ~ <b>개정</b>	*3)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범위[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하며, ②의 예능교습학원의 경우 예능교습학원의 예능분야의 교습과정만 해당함)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또는 체육시설(☞ 입시·검정·보습, 외국어, 독서실, 정보 등 분야는 공제대상 아님) <b>신설</b>
p368	월세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국민주택규모의 주택(3자녀 이상인 경우 100m <sup>2</sup> 이하 주택 포함)이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b>개정안</b>	과세기간 종료일 현~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m <sup>2</sup> 이하인 주택도 포함]이거나 ~임차하기 위하여(사글세액 포함) 지급하는 경우 <b>개정</b>
p384	(2) 이월과세 효과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가업상속 공제액÷가업상속 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개인가업) 가업상속공제금액÷가업상속 재산가액 (법인가업)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해당 법인가업의 총자산가액 <b>개정</b>
p406	102 × (제조장소가 ~경우 연 1천2백만원 이하인~	102 × (제조장소가 ~경우로서 소득금액이 연 1천2백만원 이하인~
p437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인~
p438	(1) 직무발명보상금~ 내용삽입	(1) 직무발명보상금~ ※ 같은 근무하던 회사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 없음
p441	*2)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가 아니므로 과세최저한이 아니다.	*2)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면서 200만원 이하가 아니므로 과세최저한이 아니다.
p474	(다) 과세표준신고서 ~고지된 세액 <b>개정안</b> (라) 소득세 ~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b>개정안</b>	(다) 신고납부세액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는 세액 <b>개정</b> (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국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했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는 세액 <b>개정</b>
p499	* 고충민원 : 국세와 ~요청하는 민원	* 고충민원 : 국세와 ~요청하는 민원(고충민원에서 제외하는 신청 사항 :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 사항 ② 「조세법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 ③ 이행강제금심의회위원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되었거나 심의 중인 사항) <b>개정</b>
p512	3)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 부분조사 내용삽입	(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취소·철회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 각 호의 사유로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과세관청이 해당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b>개정</b>